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65호 2015. 1. 5.(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 ----- 7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신현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4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 12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구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서구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서구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서구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서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등이 서구 소속공무원과 구의원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서명·날인
-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협의회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사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서구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구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무일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서구지역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서구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변경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형·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 등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개설등록”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1. 0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푸른로13번길 3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1-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76-66	푸른로13번길 3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가정동 97-3	영곡로 574	2009-08-28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3	왕길동 19, 20, 21-3	봉수대로 1212-16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음	



인천도시관리계획(신현재건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신현재건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I	1BL	1-1 (신현동 254)	1-1 (신현동 302-1)	163,872.7	공동주택
		1-2 (신현동 254-11)	1-2 (신현동 302-2)	500.0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1-3 (신현동 254-12)	1-3 (신현동 302-3)	499.9	제1종근린생활시설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p>지번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획지:신현동 254 → 신현동 302-1 •1-2획지:신현동 254-11 → 신현동 302-2 •1-3획지:신현동 254-12 → 신현동 3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준공 후 지번변경에 따른 획지 위치의 주소 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예(관)한 도시
 1065 2015. 1. 5. () 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 결정(변경) 조서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 (신현동 254-11)	1-2 (신현동 302-2)	주용도	기정	•유치원	변경
			변경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 연면적 25%이상 학원 확보, 장의사·총포판매소·안마시 술소·단란주점·다중생활시 설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50% 이하	변경없음
		용적율		250% 이하	변경없음
		층수	기정	5층 이하	변경
			변경	4층 이하	
		높이		15m 이하	변경없음
연면적	지상	1,250㎡ 이하	변경없음		
	지하	500㎡ 이하	변경없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용도 변경 : 유치원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25% 이상 학원 확보, 장의사·총포판매소·안마시술소·단란주점·다중생활시설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 변경
	•층수 변경 : 5층이하 → 4층이하	•효율적인 건축행위를 위하여 높이 를 고려한 건축물의 층수 변경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기정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동측 가정로변	유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폭 2m	보도확폭	-

- 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동측 가정로변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1-2), 제1종근린생활시설(1-3)	폭 2m	보도확폭	-

- 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위치명 변경 : 유치원 →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1-2),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1-3)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 한계선 위치명 변경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4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98호(1999.06.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서구 마전동 산17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 사업명: 당하지구계 가시설철거 및 사면안정화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7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사업
 - 【명칭】 당하지구계 가시설철거 및 사면안정화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 L=214m, B=8m 중
미집행구간 L=214m, B=2~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5. 3. 1 ~ 2015.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관입 면적(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도로내 (도로부)	도로외 (법면부)	계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서구 마전동	1,070	도	7,804.7	601.0		601.0	인천광역시서구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삼곡동)				
2	인천서구 마전동	산177-1	임	603.0		108.0	108.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3	인천서구 마전동	산176-5	임	402.0		26.0	26.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4	인천서구 마전동	산176-4	임	2,464.0		720.0	720.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5	인천서구 마전동	산176-1	임	14,891.0		1,107.0	1,107.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6	인천서구 마전동	산178-1	임	5,010.0		503.0	503.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7	인천서구 마전동	산179-1	임	15,283.0		214.0	214.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합계		7개필지		46,457.7	601.0	2,678.0	3,279.0						

2. 지장물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명칭)	주소	성명(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서구 마전동	산177-1임	수목		2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2	인천서구 마전동	산176-4임	수목		10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3	인천서구 마전동	산176-1임	수목		46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4	인천서구 마전동	산178-1임	수목		33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5	인천서구 마전동	산179-1임	수목		8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합계					99						